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19106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파산자 C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 D

2. E

변론 종결 2020. 3. 27

판결 선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C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C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파산자 C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 이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41,036,193원, 피고 E은 피고 파산관재인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2.경부터 C 유한회사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위 회사는 마지막 공급 이후인 2019. 2.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바(제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계속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파산계속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파산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65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금 채권은 파산선고(2019. 2. 21.)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같은 법 제423조), 원고가 파산채권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와 별도로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경 C 유한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회사에게 주류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E은 위 계약상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000만 원을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미지급된 대금 41,036,193원 중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현경